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2-353호 배포일시 : 2012.4.23(월)

문의 : FTA정책국장 최동규(☎:2100-8101)

제 목 : “지하철 9호선 요금갈등 ‘투자자소송’ 적용될 수도”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4.23) 및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4.23) 관련

“지하철 9호선 요금갈등 ‘투자자소송’ 적용될 수도”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 및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24.5%) … 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 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미국 투자회사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용하고 있는 인컴펀드 오브아메리카가 4.89%를 보유하고 있다.” (경향신문)

(사실관계)

- 상기 기사는 지하철9호선의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투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관계 관련, 기사의 내용은 작년 상반기에 공시된 지분 구조에 기초한 것이며, 2012.4월 현재 미국 투자펀드인 '인컴펀드 오브아메리카(Income Fund of America)'는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기사내용)

- “송기호 변호사는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요금 인상이 좌절될 경우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실관계)

- 상기 기사에서 인용한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조치가 투자챕터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투자, 투자자, 당사국의 조치의 해당 여부 및 협정 등 위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 우선, 서울시 지하철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간의 계약(일종의 투자계약)임.
 - 한·미 FTA상의 투자 계약은 중앙정부와 외국인투자자간의 천연자원, 기반시설사업 등에 관련된 계약(제11.28조)으로 기사상의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은 한·미 FTA상의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ISD 대상이 아님.
- 또한, 한·미 FTA 투자챕터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Company)는 현재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FTA상의 미국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아 ISD를 제기할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못함.

- 가령 미국 투자자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투자챕터 의무 위반시 ISD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본 사안은 단순히 요금 산정에 대한 분쟁이므로 간접수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서울시의 계약상 분쟁에 대한 국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3. (기사내용)

- “실제로 아르헨티나 수도 공급 민영화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 ‘아주리’는 2006년,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 운영을 다시 공영화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 1억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한겨례신문)

(사실관계)

- 상기 기사는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 기사에서 인용된 아주리(Azurix)社 대 아르헨티나 사건의 경우, 우리부에서 누차 설명하였듯이,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가 계약상 정화시설 수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수도 요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양허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로 아주리社에 손해를 입혀 국제 중재에 제기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정책행위로 볼 수 없음(아주리 사건 관련 내용은 2011.11.2자 외교 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